



서울대모초등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학교체육시설) 사용 허가

1. 관련

- 가. 서울대모초등학교-3282(2022.4.5.) 「골프연습장 사용연장 허가신청」
- 나. 서울대모초등학교-5217(2022. 5. 27.)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
- 다. 서울대모초등학교-6345(2022. 6. 30.)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안내」

2. 우리학교 공유재산(골프연습장)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 가. 신청인: 대모체육클럽 최옥매
- 나. 사용시설명: 골프연습장
- 다. 사용허가 기간: 2022. 7. 22. ~2027. 7. 21.(5년)
※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자동 사용 종료
- 라. 사용료: (감정평가액) × (대부요율) × (부가가치세)
 $549,161,800\text{원} \times 40/1000 \times 1.1 = \underline{24,163,120\text{원}}$

- 붙임 1. 공유재산유상사용허가서 1부
2. 허가조건 1부
3. 토지사용료 산출내역 1부
4. 건물무상사용기간 관련 공문 사본 1부. 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 목적은 학생의 골프교육과 성인의 골프 평생학습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 기간은 2022년 7월 22일로부터 2027년 7월 21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간 건물사용료와 연간 토지사용료로 구분된다

1. 연간 건물사용료는 기부채납된 건물의 가치를 고려하여 제2조의 사용기간 동안 무료로 한다
2. 연간 토지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학교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학교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매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학교장이 허가해 준 재산에 대해 손해보험(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학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수익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수익 허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 되게 사용한 경우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학교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학교장이 재산관리 및 학생 안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수익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제한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한 학교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학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는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학교장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수익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여 학교장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 허가조건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 감독) 본 허가 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학교장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2022년 6월 30일

허가자: 서울대모초등학교장 김인숙

사용자: 대모체육클럽 대표 최옥매 (인)

(주민번호 621130-2710723, HP 010-3248-8133)

입회자: 서울대모초등학교 행정실장

공유재산 유상 사용 · 수익허가서

사 용 자 : 대모체육클럽 최옥매(621130-2*****)

재산의 표시 : 서울대모초등학교 내 골프연습장

신청인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10길 15, 상록수아파트 107동406호

성명 : 최 옥 매

2022년 4월 4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 · 수익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붙 임 : 허가 조건 1부.

2022년 6월 30일

서울대모초등학교 장 (인)

